

의안번호	2207913
의 퇴 인	안상훈의원
회 답 일	2025.02.17.
추 계 번호	25C0664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경우 추가재정 소요는 2025년 9,900만원, 2027년 5억 9,4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6억 9,300만원으로 추계됨

- 개정안에 따라 의사, 치과 의사, 한 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의료기사 등 7개의 수급추계위원회(의사: 2025년, 그 외 직종: 2027년)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수급추계위원회 (안 제21조의2)	99	—	594	—	—	693	34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주: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수급추계센터)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1조의2 (수급추계위원회)	○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직종별로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수급추계위원회”)를 둠(제1항) 1. 「의료법」에 따른 의사·치과 의사·한 의사 2.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3.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인력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함. 이 경우 제6항제1호 및 제6항제2호에 따른 단체들은 타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에 대해 전문성 검증을 요청할 수 있고, 장관은 각 단체로부터 전체 위원에 대한 동의를 득한 뒤에 위촉을 하여야 함(제6항)	의무규정

1	안 제21조의2 (수급추계위원회)	○ 1.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 및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2.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노동자단체, 소비자·환자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3. 보건의료 관련 학회, 경제학회, 통계학회,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은 보건의료인력 직종별로 각각 위촉하되, 제6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은 모든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의 위원이 되도록 위촉함(제8항) ○ 수급추계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제9항) ○ 그 밖에 수급추계 주기, 수급추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10항)	의무규정
2	안 제21조의3 (수급추계센터)	○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적 추계작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이하 “수급추계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음(제1항)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추계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1조의2 (수급추계위원회)	○	○ 유사사례를 참조하여 추계
2	안 제21조의3 (수급추계센터)	×	○ 개정안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 추계센터를 운영할 기관의 선정, 구체적 조직 규모 및 소요 예산 등을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는 보건복지부의 유사사례를 준용하므로, 위원회 구성, 운영 방법, 횟수 등의 변경 시에는 추가재정소요도 달라질 수 있음¹⁾
 -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추계 전문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준용²⁾
 -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해 2022년 8월 학계, 연구기관, 정부 부처 등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재정추계 전문위원회”를 발족하고 2023년 4월 까지 총 22회의 회의를 통해 최종 보고서를 구성함³⁾
-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하되, 부칙에 따라 의사 외의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추계는 2027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가정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추계함
 - 안 제21조의2는 수급추계위원회를 각 직종(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의료기사)별로 설치하도록 명시하였으며, 각 직종별 위원회의 정원을 민간위원 15명으로 정함
 - 또한 개정안은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 한다고 명시하였는데, 본 추계는 보건복지부가 동법 제15조에 따라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1) 참고로, 개정안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는 현행법 제15조제1호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 및 수급관리 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사업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현실점에 위원회 개최 빈도를 현실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움. 보건복지부는 2023년에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적정인력기준(안)’ 마련 연구를 위해 2억 7,000만원을 배정함

2) 개정안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동법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비롯한 대다수의 보건복지부 산하의 심의·의결 기능을 하는 위원회의 개최 횟수를 준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3)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2023년)을 위해 재정계산위원회를 통해 제도 전반을 논의하고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재정추계 전문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와 기금운용제도 개선방안 논의를 각각 진행함

수립하는 점을 준용하여 5년마다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다만, 부칙에 따라 의사 수급추계위원회는 2025년, 그 외의 직종에 대한 수급추계 위원회는 2027년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 참고로, 개정안 부칙 제2조(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수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결정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함

□ 추가재정소요는 위원회에 위촉된 민간위원에게 지급하는 참석 수당을 추계하며, 이외의 운영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추가재정소요는 수급추계위원회를 운영하는 추계 첫째(의사: 2025년, 그 외 직종: 2027년)에만 발생하며, 위원회 민간위원 수에 분과위원회의 수와 참석 수당 단가 및 연간 회의 횟수를 곱하여 산출
- (위원 정수) 수당 지급의 대상이 되는 민간위원은 개정안에 따른 15인으로 가정하고, 총 7개의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가정
- (회의 횟수) 연 22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 (참석 수당 단가)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⁴⁾ 및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예산을 준용하여 3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에 따라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9,900만원, 2027년 5억 9,4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6억 9,300만원으로 추계됨

4)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위원회 참석비는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000원을 지급하되,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음.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경비, 식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 회의안전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

[표 2]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99	-	594	-	-	693	34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슬기	02-6788-4740	sg.lim@assembly.go.kr